##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허2745 거절결정(상)

원 고 A

이탈리아

대표자 최고경영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신

담당변리사 손인호, 이성규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

##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22. 2. 17. 2020원25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갑 제4호증)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제1462867호/ 2018. 9. 28.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Aromatics[essential oils], balm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hair conditioners, mouth washes, not for medical purposes, cosmetics, cosmetic creams, skin whitening creams, dentifrices, deodorants for human beings, deodorants for animals, detergents for the skin only for personal use, massage gel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hair lotions, lotions for cosmetic purposes, beauty masks, oils for toilet purposes, essential oils, oils for perfumes and scents. oils for cosmetic purposes, sun-tanning preparations[cosmetics], cosmetic preparations for baths, aloe vera preparations for cosmetic purposes, douching preparations for personal sanitary or deodorant purposes[toiletries], bath preparat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preparations, cosmetic preparations for slimming purposes,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re, depilatory preparations, shaving preparations,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tissues impregnated with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shaving soap, soap only for personal use, deodorant soap, soap for cosmetic use, shampoos, after-shave lotions, cosmetics for animals, deodorants for pets, perfumes, breath freshening sprays, cosmetic preparations for hair, hygiene and massage, essential oils for beverages.

#### 나.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

- 1) **선등록상표 1**(갑 제3호증의 1)
  -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2. 4./ 2004. 5. 7./ 제582014호

# भ) नक्षः Natura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스킨밀크, 향수, 라벤더유, 화장용로션처리티슈, 미용비누, 샴푸, 치약, 립스틱, 엣센스(미용농축액), 나리싱크림
  - 2) **선등록상표 2**(갑 제3호증의 2)
    -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3. 20./ 2013. 7. 19./ 제983256호
    - 나) 구성: NATURA
    - 다)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 3) **선등록상표 3**(갑 제3호증의 4)
-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소멸일: 2007. 5. 2./ 2009. 12. 10./ 제 808634호/ 2019. 12. 11.

# **NATURA**

내) 구성: **나투라**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리무버, 마스카라, 마스크팩, 매니큐어, 아이섀도, 일반화장수, 콜드크림, 가울세리아유, 목향, 가발고정용 접착제, 가루비누, 면도용비누,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구두약, 가구용 및 마루용 광택제, 금강사(金剛砂), 금강사지(金剛砂紙)

### 4) 선등록상표 4(갑 제3호증의 5)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12. 8./ 2016. 8. 16./ 제1196327호

# ਪ) ਰੂਖ: natura nature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라벤더 오일, 화장용 탈지면, 가발고정용 접착제, 세제, 미용비누, 샴푸, 메이크업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아이라이너, 립스틱, 치약, 향수, 애완동물용 화장품, 세면용품, 인조 속눈썹, 콤팩트용 고형분, 아이브라이트너, 네일에나멜, 바디오일

#### 5) **선등록상표 5**(갑 제3호증의 6)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6. 25./ 2015. 9. 1./ 제1127003호

# 바 구성: 나투라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손톱스티커,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 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화장용 탈지면, 샴푸, 치약,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살균성 면도석, 아이섀도

#### 6) **선등록서비스표 1**(갑 제3호증의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6. 25./ 2015. 8. 6./ 제328755호

# 나 무라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마케팅 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작성업, 경영회계업, 약제도매업, 화장품소매업, 직업알선업, 사무처리업, 출판물정기구독알선업, 가공한 곡물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광천수 및 생수소매업, 향료소매업, 치약도매업, 화장용용구 판매대행업, 전동식 화장용용구(전기식) 판매대행업, 녹차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녹차음료 판매대행업

#### 7) **선등록서비스표 2**(갑 제3호증의 7)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5. 28./ 2017. 1. 24./ 제384884호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주말농장체험교육업, 주말농장체험교육지도업, 주말농장체험교육정보제공업, 주말농장체험학습업, 교육목적의 농촌문화체험장경영업, 교육연구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목공예체험목적의 교육업, 산림치유체험 학습관경영업, 자연생태체험목적의 교육업, 자연학습장 시설제공업, 다도(茶道)지도업, 원예지도업, 요리지도업,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서비스업, 정서 계발목적의 어린이 체험학습장 체인업, 건강 및 안전 관련 트레이닝을 위한 교육 목적의 어린이 체험학습장 시설제공업,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심신안정/ 오감발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

는 교육목적의 어린이 체험학습장경영업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3. 14. "① 이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정제(detergents), 비누(soap)는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고, ②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1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서로비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8. "상표법제38조 제1항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었으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는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2020. 10. 20. 특허심판원 2020원2548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2. 17.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œ' 부분은 그 의미, 거래계에서의 사용태양,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

부분이 도안화된 점, 거래계에서의 사용태 양,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적 식별 력이 높아 위 부분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호 칭·관념이 모두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natura'의 인지도, 식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요부는 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 사실

갑 제7, 8, 10, 12 내지 14, 16 내지 27, 30 내지 37,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 ry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본' 부분과 관련된 사실

- 가) 'natura'는 '자연'을 의미하는 명사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언론기사가 다수 보도되었고, 위 단어가 사용된 글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되기도 하 였다.
- 나) 특정 작가는 〈자연스러운 인간(Homo Natura)〉이라는 전시명으로 개인 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위 개인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cosmetics)'과 관련하여,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화장품이 제작되었다는 취지의 홍보성 언론기사가 다수보도되었는데, 그 중 일부 상품은 상품명에 '내추릴(natural)'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을 표현하면서 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라) 네이버 쇼핑에서 'nature 화장품'으로 검색하면 총 158,498건의 화장품 제품 검색결과가, 'natura'로 검색하면 화장품, 샴푸, 향수 등 총 8,928건의 검색결과가 각 나타난다.
  - 마)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화장품 등의 상품에 'natura'가 제품명의 일부로 사

## 용되고 있다.

클레보스 네츄라 포레스타 샴푸 (갑 제12호증)	수페 네츄라 버치트리 모이스처라이징 토너 (갑 제13호증)	리나투라 밍크 페이스오일 (갑 제14호증)		ᆒ어 케어 시리즈 16호증)
スペリ 明天党会 7年代を 本代外報 は本 NATURA FORESTA SHAMPOO	Will construct the second seco	Revariable Mank Face Oil Published	William Willia	Robati Basis
	네츄라 비세	네츠리 시베리카		1l뜨리뒴 O.A

나투라 루미나 (갑 제17호증)	네츄라 비세 다이아몬드 화이트 토닝 로션 (갑 제18호증)	네추라 시베리카 남성용 올인원 크림 (갑 제19호증)	나투라비타 임산부크림 (갑 제20호증)	나뚜라하우스 꾸찌올로 기저귀 파우더크림 (갑 제21호증)
Deminds, Regard  William  What  See See See See See See See See See Se	DIAMOND CHART TARGET STORY THE STORY	NATURA SIBERICA  WOLF POWER  ***AND TO THE	Naturavita  Source and a security of the secur	PASTA PER EL CAMBON projections of blanch for the cambon projections of blanch for the cambon fo

바) 'nature', 'natural', 'natura' 등이 포함된 표장들

Nature Edition

### **NATURE ROOM** 네이쳐룸



NATURE PLANET

Natural Immunity

natural time

NATURAL SHIELD .

NATURAQUA NATURASIBERICA )이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상품들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2015. 11. 24. 이탈리아에서 등록되었는데.

이탈리아에는 'natura' 문자를 포함한 상표( NATURA. VERDE NATURA







bioequilibrio 등) 수십여 개가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상

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아) 미국에서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이외에도 'natura'가 포함된 상표 들('LA NATURA', 'NATURA', 'NATURA LIVING', 'Natura Bona', 'NaturaCastle' 등)이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화장품 제품에 사용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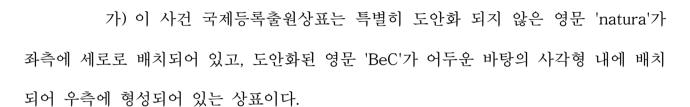
나) 원고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요부가 '본' 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본' 부분은 ① 평범한 서체의 영문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국 제등록출원상표에서 좌측에 비교적으로 작은 크기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위 단어는 '자연'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 자가 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 상품의 거래계에서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 등이 원재료로 사용 되었다는 취지를 광고하기 위하여 'natura'는 물론, 'natural', 'nature' 등의 단어가 빈 번하게 사용되는 점, ⑤ 상품명에 'natura'가 포함된 화장품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⑥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는 '**と**' 부분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 하여 그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부 부분은 ① 영문이기는 하나 도안화로 인하여 일 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점. ② 전체 상표에서 물리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점. ③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

라)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natura'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계에서 그 제품명 내지 원재료 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다수 사용되고 있어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면도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요부



1( Natura ), 선등록상표 2( NATURA)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 두 달라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등록상표 1, 2는 주지성을 갖춘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ළ**'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을 제1, 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1, 2의 권리자는 1969년경 설립된 브라질의 화장품 기업으로, 2021년에 미국의 'Direct Selling News'에 서 'Direct Selling' 분야 1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사실, 스페인 패션·뷰티 전문매 체 '모다에스(Modaes)'가 선정한 글로벌 향수 기업 랭킹에서 5위를 기록한 사실. 뷰티 및 패션 전문 저널 'WWD'에서 선정한 화장품 기업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한 사실, 쿠팡 에서 '나투라 에코스(Natura ECOS)'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 기는 하다.
- 3) 그러나 갑 제45,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등록상표 1, 2의 권 리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네이버 쇼핑에서 '나 투라앤코'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없고, 'natura & co'로 검색하더라도 검색결과가 23 건에 불과한데, 대부분 선등록상표 1, 2와 무관한 상품인 점, ③ 선등록상표 1, 2의 권

리자가 스스로 발간한 2020년 연간 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선등록상표 1, 2를 사용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에 선등록상표 1, 2의 권리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등록상표 1, 2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가정세탁용 색상광택제,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녹 제거제, 도료용 박리제(剝離劑), 래커제거제, 바닥용 미끄럼방지 왁스, 바닥용 미끄럼방 지용액, 세탁용 광택제,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소다, 세탁용 왁스, 세탁용 청분(靑 粉), 세탁용 표백제, 소다잿물, 암모니아 세정제[휘발성알칼리], 얼룩제거제, 자벨 수 (水), 차아(次亞)염소산칼륨, 청소용 및 먼지제거용 압축 캔공기, 청소용 바닥왁스 제거 제, 탈색제, 탈지용 테레빈, 탈지용 테레빈유, 표백용 소다, 표백용 염, 표백제, 피혁용 표백제, 다림질용 풀, 세탁용 광택풀, 세탁용 전분, 세탁용 풀, 마사지용 겔, 마사지용 오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바디오일, 바디크림, 배니싱크림, 베이비 오일, 베이비 파우더, 스킨로션,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 크림, 스킨클렌저, 아이로션,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아이크림, 에테르에센스, 인체용 에 센셜 오일, 입술광택제,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콜드크림, 퍼 퓸드 페이스트, 퍼퓸크림, 페이셜 로션, 페이셜 크림,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페이스 및 바디로션, 페이스 및 바디밀크,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피부미백크림, 핸드로션, 화장수, 화장용 겔, 화장용 과산화수소, 화장용 그리스, 화장용 나리싱크림, 화장용 로션, 화장용 루즈,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 용 바셀린, 화장용 수렴제, 화장용 스킨프레시너, 화장용 아몬드유, 화장용 알로에베라 제, 화장용 염료, 화장용 오일, 화장용 착색제,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크렌징유액, 화장용 크림, 화장용 핸드크림, 화장제거용 로션, 화장제거제,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 트],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필, 눈썹용 화장품, 루스페이스파우더, 루즈, 립라이 너,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제거제,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 연필, 손톱강화용 로션, 손톱강화제, 손톱광택용 파우더,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용 연필,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트, 프레스트 페이스파우더, 화장용 매니큐어,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 면도용 겔, 면도용 제제, 목욕용 염, 목욕용 화장품, 미용목욕물첨가제,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비드, 배스오일, 배스폼, 비의 료용 목욕염, 살균성 면도석, 살균성 명반석, 샤워겔, 샤워크림, 샤워폼 및 배스폼, 선블 록로션, 선스크린제, 셰이빙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애프터선크림, 애프터셰이브 로 션, 애프터셰이브에멀션, 애프터셰이브크림, 의료용을 제외한 마사지 젤, 의료용을 제외 한 크림, 인체용 방취제, 체중감량용 화장품, 프리셰이브크림, 화장용 목욕파우더, 화장 용 발한억제제, 화장용 선밀크로션, 화장용 선오일, 화장용 선탠제, 화장용 표백제, 머 릿기름,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용 웨이브제, 모발용 파우더, 모발용 표백제, 모발탈색제, 베이럼, 비의료용 비듬로션, 비의료용 비듬크림, 유 아용 헤어컨디셔너, 콜드퍼머용액, 콧수염용 왁스, 탈모용 왁스, 탈모제{화장용}, 턱수염 용 로션, 턱수염용 염료, 파마중화제,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 나리셔,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마스카라,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발삼,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컨디셔닝 오일,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크림, 헤어크 림, 헤어토닉, 화장용 포마드, 라벤더향수, 린넨방향용 향분, 방향용 향분, 분말향수, 액 체형 향수, 인체용 방향제[향수], 향분, 향수, 헬리오트로핀, 화장용 향유, 화장품, 가울 세리아 오일, 가정용 방향제, 가정용 청향제, 공기용 방향제, 꽃 추출물 향료, 꽃 향료,

라벤더 오일, 레몬정유, 목향, 민트 정유, 바닐라향료, 박하오일 향료, 방향용 목재, 베 르가모트 오일, 복합향료, 사프롤, 삼나무 정유(精油), 선향(線香), 시트론 정유(精油), 아몬드 오일, 앰버 향료, 에테르 오일, 용연향, 이오논 향료, 자동차용 방향제, 자스민 오일, 장미 오일, 제라니올유, 조합향료, 천연향료, 크로브 오일[정향유], 테르펜 정유, 포푸리향, 합성사향, 합성향료, 향(香), 향료, 향료 및 향수용 오일, 향료용 민트, 향료용 사향, 향료용 천연사향, 화장품제조용 향유, 훈향, 인조속눈썹 고정용 접착제, 화장용 접착제, 손톱스티커, 인조 속눈썹, 인조 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 화 장용 면봉,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畵), 화장용 탈지면, 가발고정용 접착제, 가루비 누, 가정용 물때제거제, 가정용 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가정용 세정제, 고형 비 누, 드라이크리닝제, 마분(磨粉), 배수관세정제, 벽지세정제, 비누{인체용은 제외}, 석유 계 합성세제, 섬유광택용 비누, 세강(洗糠), 세액(洗液), 세정용 백악(白堊), 세정용 오 일, 세정용 퀼라야 수피(樹皮), 세정용 화산재, 세정제 함유 걸레, 세정제{제조공정용/의 료용은 제외}, 세제, 세제용 클렌저, 세탁비누, 세탁용 침전세제, 세탁용 화산재, 소독용 비누, 식기세척기용 건조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액, 식기세척제, 유리용 세정 제, 의류용 린스, 자동차앞유리용 세정액, 자동차용 세정제, 타일변기세정제, 고형화장 비누, 드라이 샴푸, 면도용 무스, 면도용 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바디 크림 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발 발한용 비누, 발한방지용 비누, 방취비누, 샴푸, 손세정제, 아몬드비누, 액체목욕비누, 약용 비누{비의료용}, 유아용 샴푸, 인체용 비누, 족욕용 물 비누, 종이비누, 크림비누, 페이셜 워시, 핸드클리너[손세정제], 향수비누, 헤어린스, 화 장비누, 구강청량용 스트립,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양치액{비의료용},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 치아미백용 겔(gel), 치아분,

치아세정용 로션, 치아세정제, 치약, 구두약, 구두용 왁스, 구두용 크림, 구두재봉실용 왁스, 가구용 광택제, 가구용 및 마루용 광택제, 가죽보존용 광택제, 가죽용 왁스, 가죽용 크림, 광택왁스, 광택용 벵갈라, 광택용 트리폴리석(石), 광택제, 광택지, 광택크림, 마루용 광택제, 마루용왁스, 마루용장판액, 식물의 잎 광택제, 자동차용 광택제, 재봉용왁스, 쪽마루용 왁스, 애완동물용 방취제,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용 화장품, 금강사(金剛砂), 금강사지(金剛砂紙), 금강사포(金剛砂布), 금속탄화물(연마재), 다듬질돌, 디아만틴(연마재), 면도칼혁지용 페이스트, 백악(연마재), 보석세공용 벵갈라, 사지(砂紙), 사포(砂布), 실리콘카바이드(연마재), 연마석, 연마시트, 연마용 경석, 연마용 롤, 연마용모래, 연마용 사포, 연마용액, 연마재, 연마지[사지(砂紙)], 연마포, 연삭제, 코런덤, 비비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에센스(화장품 농축액). 끝.